## 소프트웨어 제작 공급 계약서

<u>㈜플래노바</u> (이하 "갑"이라함) 와 <u>솔루션하우스</u> (이하 "을"이라함) 는 다음과 같이 업무계약을 체결한다.

#### 제 1 조 목적

"갑"과 "을"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준수하고, 서로 동등한 주체로서 상호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에 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 2 조 계약기간, 금액 및 대금의 지급

- 1) 계약기간은 2025년 10월 01일부터 2025 년 10월 29일까지로 하며 '갑'과 '을'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
- 2) 본 계약 이행의 대가로 "갑"은"을"에게 일금 2,000,000원을 지급한다.

### 제 3 조 업무의 내용

"을"은 "갑"이 의뢰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- 1) "갑"이 의뢰한 개발 사항은 (1)기획, (2)디자인, (3)퍼블리싱, (4)프런트앤드개발, (5)백엔드 개발 중 (1),(2),(3),(4),(5) 영역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
  - (1) 기획: 스토리보드 ui 레이아웃 문서 작성
  - (2) 디자인: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한 시각적인 GUI 디자인
  - (3) 퍼블리싱: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되는 HTML, CSS
  - (4) 프런트앤드 개발: 웹페이지 기능 개발, 커스텀 코드 제작 및 스크립트 제작
  - (5) 백엔드 개발: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
- 2) "을"이 진행하여야 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1) "을"은 상기 명시된 결과물을 "갑"에게 원본파일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.
  - 2) 을"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"갑"에게 업무 진행상황을 전달하여야 한다.

#### 제 4 조 추가비용

계약서에 표기되지 않은 별도의 작업을 요청하거나 이로 인해 시간적, 인적 자원이 별도로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제작비용을 청구한다. 단 이로 인해 발생되는 별도의 제작비 외 부대비용은 '갑'이 보상해 주어야 한다.

#### 제 5 조 수정 및 변경

"갑"과 "을"이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정 및 변경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

## 디자인

- 1) 수정사항 요청에 대해 제한은 없지만 새로운 작업물을 창작해야 하는 경우는 수정사항으로 볼 수 없다.
- 2) 디자인 작업 시에 디자인 컨셉 시안 확정하고, 세부페이지 디자인 작업 중 컨셉 변경은 불가하다.
- 3) 기획-디자인-퍼블리싱-개발 단계에서 각 단계가 끝난 후 해당 단계에 대한 수정요청은 불가하다. (디자인 작업이 끝나고 퍼블리싱 단계에서 디자인 수정을 요청할 수 없다)
- 4) "을"이 유지보수의 의무를 가지는 범위는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.

### 제 6 조 유지 및 보수

"을"은 "갑"에게 개발 완료일 이후 시행되는 무상 유지, 보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

- 1) "을"은 개발 완료일 이후 2주 동안 무상 유지보수의 의무를 가진다
- 2) 디자인 유지보수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A. 폰트변경, 색상변경, 레이아웃 변경, 배경 이미지 변경, 객체 위치 변경 등등
- 3) "을"이 유지보수의 의무를 가지는 범위는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 및 상호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.

## 제 7 조 계약의 변경

"갑"과 "을"은 특정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상호 합의하에 기명, 날인한 서면 또는 합의문(이메일)을 통하여 작업기간, 업무의 내용, 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.

## 제 8 조 계약의 해지

- 1) 계약기간 중 "갑"과 "을"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,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여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2)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경우, 상호 합의하에 해지할 수 있으며, 작업물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 단, 일부 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작업 단계별 [기획/디자인/퍼블리싱] 개별 작업 견적서를 바탕으로 지급된 대금을 기준으로 단계별 완료된 작업 결과물을 받을 수 있다. 2-1) 계약기간의 1/3 이 경과한 경우: "갑"은 "을"에게 계약대금의 50%를 지급하여야 한다.
  - 2-2) 계약기간의 2/3 이 경과한 경우: "갑"은 "을"에게 계약대금의 75%를 지급하여야 한다.
  - 2-3) 계약기간의 3/3 이 초과한 경우: "갑"은 "을"에게 계약대금의 100%를 지급하여야 한다.

## 제 9 조 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사용

1) "을"은 명시된 기간내에 "갑"에게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일부 결과물만 제공할 수 있다.

- 2) "갑"은 7 영업일 이내에 "을"이 전달한 결과물에 대하여 검수를 종료하여야 하며, 결과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7 일 이내에 이의사항을 서면 또는 이메일로 "을"에게 통지하여야 하고,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3) "갑"은 본 계약이 완료되기전 "을"과 사전 합의하여 미완성결과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.

## 제 10 조 결과물 및 2 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

- 1)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을 개발,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 일체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"갑"에게 귀속된다.
- 2) 다만 디자인, 개발 결과물에 대해 "을"은 결과물을 개인의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으며 "갑"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다. 단 "을"은 포트폴리오 사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한다.

#### 제 11 조 기밀유지

- 1) "을"은 "갑"이 기밀유지를 위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.
- 2) "갑"은 "을"에게 기밀유지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을 서면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한다.

## 제 12 조 손해배상

- 1) "을"은 계약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과물 또는 제 3 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.
- 2) 검수 후 인수한 결과물에 대한 손해는 "갑"이 부담한다.
- 3) "을"은 "갑"과의 협의에 따라 단계별로 제작한 결과물이 "갑"의 목적에 맞지 않게 제작되어 디자인의 재작업이 불가피한 경우, 향후 소요되는 비용은 "갑"이 부담한다.

# 을

대표자성명 신성민

사업자(주민등록)번호 854-37-01547

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성장로70



(인)

# 갑

대표자성명 송국진

사업자(주민등록)번호 617-87-02247

주소 충남 공주시 대통 1길 49 (반죽동)